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5.

발 의 자 : 문금주 · 김남근 · 박지원
이기현 · 이정문 · 이개호
채현일 · 권향엽 · 서삼석
이광희 · 정일영 · 이원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.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,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,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,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(제25조제5호 삭제 등).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감사위원회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
제31조제1항 중 “상임감사”를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상임감사”를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

- ②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되며,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 의장이 주재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임원)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~ 4. (생략) 5. <u>상임감사 1명</u>	제25조(임원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제26조(임원의 직무) ① ~ ④ (생략) ⑤ <u>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.</u>	제26조(임원의 직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감사위원회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
제2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 ~ 2. (생략) 3. 「 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2조제1항, 제31조제6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제2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 1 ~ 2. (현행과 같음) 3. 「 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대표권의 제한) ① 마사회와	제31조(대표권의 제한) ① -----

회장·부회장·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<u>상임감사</u>가 마사회를 대표한다.	----- ----- -----<u>감사위원회</u>----- -----.
② (생략) 제32조(이사회) ① (생략) ② <u>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,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</u> ③ ~ ⑦ (생략) ⑧ <u>상임감사</u>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	② (현행과 같음) 제32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되며,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 의장이 주재한다.</u>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감사위원회</u>----- -----.